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진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04 발의연월일: 2024. 10. 25.

발 의 자:정진욱 · 민형배 · 박희승

박해철 • 이수진 • 이재관

박홍배 • 이개호 • 조인철

이언주 · 백승아 · 양부남

이용선 · 임광현 · 안도걸

황명선 • 박민규 • 추미애

이광희 · 송재봉 · 김영환

이병진 • 한민수 의원

(239]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.

하지만,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만 대 안교육기관은 미포함됨.

이에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하 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(체육장을 포함한다)와 교지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~	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	4
하는 시설의 소유자 저유자	
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	
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	
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	
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흡연자	
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	
있으며,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	
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	
·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	
정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의2.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
	법률」에 따른 대안교육기관
	의 교사(체육장을 포함한다)
	와 교지
7. ~ 26. (생 략)	7. ~ 26. (현행과 같음)
⑤ ~ ⑨ (생 략)	⑤ ~ ⑨ (현행과 같음)